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4. 6. 12.

행정재경위원회

의안 번호	380
----------	-----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4. 5. 30. 강남구청장(문화도시과)

나. 상정의결

- 제319회 강남구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 제2차 회의(2024. 6. 12.)
“수정가결”

2. 제안설명 요지(미래문화국장 : 문경수)

가. 제안이유

- 「서울특별시 강남구 독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상기 조례와 중복되는 내용은 삭제하고, 도서관운영위원회의 기능을 개정하여 도서관의 효율적 운영을 통한 지역사회의 정보화 촉진과 독서증진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서울특별시 강남구 독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와 중복되는 내용 삭제(안 제1조 및 안 제4조)
- 「도서관법」 제34조에 의거 도서관운영위원회의 심의대상을 개정하여 도서관의 균형있는 발전과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안 제10조 및 안 제12조)
- 기타 법안용어 수정 및 정비(안 제5조, 안 제9조 및 안 제16조)

다. 참고사항

- 관계법령: 「도서관법」 제34조(공립 공공도서관의 관장 및 도서관운영위원회 등)

③ 제2항에 따른 도서관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한다.

○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 합 의: 해당기관 없음

○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4. 4. 19. ~ 2024. 5. 9.)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규제심사: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4) 부패영향평가: 특기할 사항 없음

5) 성별영향분석평가: 분석평가지 특기할 사항 없음(분석평가 완료)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 구경남)

○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 보면

- 안 제1조(목적)에서는 이 조례가 「도서관법」만 적용받아 「독서문화진흥법」 조문을 삭제하려는 것임.
- 안 제4조(독서진흥정책의 강구)의 규정은 「독서문화진흥법」 규정을 인용하고 있어 삭제하려는 것임.
- 안 제5조(공공도서관의 설립 육성 등)에서는 제4조의 관련 조문을 삭제함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는 것임.
- 안 제9조(도서관 운영위원회 구성)제3항 중 ‘도서관장’을 ‘도서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의 약칭을 신설하는 것은 제21조의2, 제21조의3, 제24조 등에서 관장이라는 용어를 이미 사용하고 있어 이를 보완하려는 것임.
- 안 제10조(위원회의 기능)제3호에서는 재위탁 대상 운영성과 평가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8조에 규정하고 있는 바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임. 제5호의 도서관운영위원회는 「도서관법」 제34조제2항에 근거하여 설치되어야 하는 필수 기구이나 그 구성 및 운영 조례로 다르게 할 수 있음. 또한 도서관운영위원회는 도서관의 발전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주로 심의하는 자문기관으로서의 성격을 가지므로, 핵심적인 기능은 도서관의 관리·운영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는 데 있는 바 회계연도마다 편성하는 예산과 결산에 대한 의결기능은 도서관운영위원회에 본질에 부합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보여져 삭제하는 것은 바람직해 보임. 다만, 2011년에 신설된 이래 제10조제5호의 규정은 도서관운영위원회의 주요 기능으로 작용하지 않았고 조례와 운영 실체가 일치되지 않은 상태로 방치된 채 2024년에 이르러 개정하려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보임. 제8호의 규정은 일반적인 규정으로 보임.

- 안 제12조(운영의 위탁)에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에 따라 관리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하도록 규정하고 같은 법 제3항에서는 수의계약 대상인 경우에 한하여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도서관 성과평가를 거쳐 재위탁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여져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임.
- 「도서관법」과 「독서문화진흥법」의 입법 목적이 동일하지 아니하고, 제출된 조례안에는 「도서관법」과 관련이 없는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조례의 명확성과 안정성을 확보하는 측면에서 적절하다고 판단됨. 또한 도서관운영위원회 기능을 바로잡고 용어를 정비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보이나 제12조의 재위탁 규정은 법령을 위반할 소지가 있는 바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임.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없음”

5. 토론 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수정가결”

7.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붙임 1.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2.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 정 안

관련의안번호
제380호

제안일자 : 2024.6.12.

제안자 : 행정재경위원장

1. 수정이유

- 타조례에 의거하여 용어를 명확하게 수정

2. 수정주요내용

- 용어 수정(안제10조제3호, 안제12조제5항)

강남구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10조제3호 중 “재위탁”을 “재계약”으로 한다.

안 제12조제5항 중 “재위탁”을 각각 “재계약”으로 한다.

수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수정안
<p>제10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p> <p>1. 2. (생략)</p> <p>3. 재위탁 대상 도서관의 운영성과 <u>평가와 심사</u>에 관한 사항</p> <p>4. (생략)</p> <p>5. <u>도서관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u></p> <p>6. 7. (생략)</p> <p><u><신설></u></p>	<p>제10조(위원회 기능) (현행과 같음)</p> <p>1. 2. (현행과 같음)</p> <p>3. ----- ----- <u>심사</u>----- -----</p> <p>4. (현행과 같음)</p> <p><u><삭제></u></p> <p>6. 7. (현행과 같음)</p> <p>8. <u>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u></p>	<p>제10조(위원회 기능) (현행과 같음)</p> <p>1. 2. (현행과 같음)</p> <p>3. <u>재계약</u> ----- -----</p> <p>4. ~ 8. (개정안과 같음)</p>
<p>제12조(운영의 위탁) ① ~ ④ (생략)</p> <p>⑤ 위탁기간은 위탁 계약한 날부터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으며, 위원회의 도서관 운영 성과 <u>평가를</u> 거쳐 재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u>갱신기간</u>은 5년 이내로 한</p>	<p>제12조(운영의 위탁) ① ~ ④ (현행과 같음)</p> <p>⑤ ----- ----- ----- ----- <u>심사</u>----- ----- ----- <u>재위탁기간</u>-----.</p>	<p>제12조(운영의 위탁) ① ~ ④ (현행과 같음)</p> <p>⑤ ----- ----- ----- ----- <u>재계약</u>----- ----- <u>재계약</u>-----.</p>

<p>다.</p> <p>⑥ ~ ⑧ (생략)</p>	<p>⑥ ~ ⑧ (현행과 같음)</p>	<p>-----</p> <p>·</p> <p>⑥ ~ ⑧ (현행과 같음)</p>
-----------------------------	-----------------------	---

강남구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도서관법」 제29조 및 「독서문화진흥법」 제3조”를 “「도서관법」 제29조”로 한다.

제4조를 삭제한다.

제5조제1항 중 “구청장”을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9조제3항 중 “도서관장”을 “도서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0조제3호 중 “재위탁”을 “재계약”으로, “평가와 심사”를 “심사”로 하고, 같은 조 제5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제5항 전단 중 “평가를 거쳐 재위탁”을 “심사를 거쳐 재계약”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갱신기간”을 “재계약 기간”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후단 중 “할 때에는”을 “하는 경우”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9조(도서관 운영위원회의 구성)

①·② (생략)

③ 위원회는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소관국장, 도서관 담당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구의원 1명, 도서관장, 문화계·교육계를 포함한 전문 인사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④·⑤ (생략)

제10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2. (생략)

3. 재위탁 대상 도서관의 운영성과 평가와 심사에 관한 사항

4. (생략)

5. 도서관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6. 7. (생략)

<신설>

제12조(운영의 위탁) ① ~ ④ (생략)

⑤ 위탁기간은 위탁 계약한 날

제9조(도서관 운영위원회의 구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도서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

-----.

④·⑤ (현행과 같음)

제10조(위원회 기능) -----
-----.

1. 2. (현행과 같음)

3. 재계약 -----
-- 심사-----
--

4. (현행과 같음)

<삭제>

6. 7. (현행과 같음)

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운영의 위탁)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

부터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으며, 위원회의 도서관 운영 성과 평가를 거쳐 재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⑥ ~ ⑧ (생략)

제16조(예산 및 결산) ① 수탁기관은 도서관 운영과 관련하여 사업연도마다 총수입과 총지출을 예산안으로 편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또한 같다.

② (생략)

----- 심사를 거쳐 재계약----- . ----- 재계약기간-----.

⑥ ~ ⑧ (현행과 같음)

제16조(예산 및 결산) ① -----

----- . -----
----- 하는 경우 -----.

② (현행과 같음)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구립도서관 운영과 관련한 독서문화진흥 조례 제정 및 도서관운영위원회의 심의대상 수정에 대한 조문정비에 따라 별도의 예산상의 조치가 필요치 않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4조제3항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3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7억원 미만인 경우. 다만, “한시적”이란 사업기간 1년 이하의 사업

3. 미첨부 사유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3억 미만으로 비용추계서 미첨부

4. 작성자

문화도시과 행정7급 방주영(02-3423-5952)